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[별지 제5호의4서식] <개정 2021. 2. 26.>

동물용의료기기 [ ] 제 조 / [ ] 수 입 신고서

※ [ 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신고인	업 소 명	제조업허가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
소재지	본사 (전화번호 :)
	제조소 또는 창고 (전화번호 :)

신고품목	제품명	
	업종구분	품목구분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(수입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해당 품목의 제품명(품목명ㆍ형명), 형상ㆍ구조,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, 제조방법, 성능ㆍ사용목적,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, 포장단위, 저장방법ㆍ사용기한, 주의사항, 시험규격 및 제조원(제조공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(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) 3.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(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)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(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)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(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).	수수료 10,000원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해당과 이송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증 작성
신고인		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(민원실)		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		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(교부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